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 uestion 단권형 AVR의 안전인증 대상품목 여부

단권형 AVR을 제조 및 판매하려는 업체입니다. 안전인증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단권형 AVR이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지요?
2. 안전인증 대상에 상관없이 인증을 진행할 경우 제품에 적용 및 검토되어야 할 개별 시험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저희 제품의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로이달 단권형 변압기(1, 2, 4, 8V 탭을 내어 조합으로 전압을 가변하는 구조입니다.)
 2) 제어회로 기판

A nswer 귀하께서 문의하신 AVR(자동전압조정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어 안전인증 대상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관련기준은 K 61558-1, K 61558-2-1, K 61558-2-2, K 61558-2-6, K 61558-2-13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인터넷쇼핑몰 상품 공급 및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안전인증 표시 관련

최근 인터넷쇼핑몰은 상품정보에 전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인증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도 수정되어 신제품 판매시에는 안전인증 기관 및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하도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변경되기 전부터 판매되던 제품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쇼핑몰에서는 정보 수정을 해야한다고 독촉하는데 워낙 방대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인데 상품설명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 제품은 정상적인 안전인증을 받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등 품질표시가 잘 되어있습니다.

불법전기제품 판매는 분명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정상인증 받은 제품이 인터넷 상품정보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조항들은 문구가 애매하여 의무적으로 고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불이행시 어떠한 처리를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148종의 전기용품을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불법 전기용품을 판매를 중개하는 신종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개정(09.1.1일 시행)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관리 대상전기용품에 대한 판매중개와 판매·수입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는 뜻의 표시(표시에: 안전인증필, 자율안전확인신고필, 안전인증번호·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표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불법전기용품 판매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